계약규정 제·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 주요 개정사항 등을 반영

2. 주요 제·개정 내용

가.「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 등)

- 사전심사 폐지, 입찰참가 자격완화 등 절차 합리성 개선(안 제23조, 제29조 등)
- 감염병 예방 등 경제위기 시 수의계약 확대(안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등)
- 감염병 예방 등 경제위기 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안 제62조, 제78조 등)
- 불공정거래행위 차단, 공정계약을 위한 사전진단 강화(안 제4조)
- 계약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계약금지대상 추가(안 제47조)
- 긴급입찰 사전협의 사유 추가(안 제57조)

나. 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 반영(별지서식 제4호)

다. 사규 속 숨은 오류찾기 공모에 따른 별지서식 개정(별지서식 제5호)

라. 성과공유제 제도기반 마련 (안 제47조)

마.「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기업 우대근거 마련 (안 제102조)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18층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관리처

○ 담당자(이메일) : 안선영 대리(ansy@khug.or.kr)

○ 전화번호 : 051-955-5392

○ 팩스번호 : 051-955-5305

4. 예고기간 단축사유

ㅇ 관련 법령 내용의 신속한 규정 반영

첨 부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계약규정 전문 1부.

첨부1 신 · 구조문대비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4조(계약의 원칙)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전에 「부당계약 사전진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전에 「부당계약 사전진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부당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한다.**	불공정행위 차단, 권익위원회 권고안 반영(별지서식제4호)
제8조(예정가격의 비치) ① ~ ④ (생 략) ⑤ 제4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2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예정가격의 비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7조제1항제5호**가목·바목 및 제47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개정사항 반영
제2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 <단서삭제>	사전심사 폐지로 계약절차 합리성 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사항 반영
제29조(공사의 현장설명) ①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설명일에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사로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적지역 2. 육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및 무인도 3. 산간벽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제29조(공사의 현장설명)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 제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	현장설명 폐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 3. (생 략)	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30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 삭 제 >	계속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완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15조 삭제
제38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생 략)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제38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개정사항 반영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나. < 삭 제 >**	
다. ~ 라. (생 략) 5. ~ 9. (생 략)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11. (생 략) ② ~ ③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5. ~ 9. (현행과 같음)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조문정비
제39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제39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1배**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 법령근거 명확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개정사항 반영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5조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③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참가업체 판단기준 명확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5조 개정사항 반영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⑤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제8호 또는 10호의 사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5조 개정사항 반영
제47조(수의계약) 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47조(수의계약) 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국가의 경제위기 등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사유 추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개정사항 반영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2. (생 략) 가. ~ 라. (생 략)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사항 반영
바. ~ 카. (생 략)	바. ~ 카. (현행과 같음)	
3. (생 략) 가. ~ 라. (생 략)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	3.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신 설>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 제품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사항 반영
4. ~ 5. (생 략) 가. (생 략) 1) ~ 4) (생 략)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 5.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	사회적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생 략) 나. ~ 바. (생 략)	6) (현행과 같음)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신 설>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사항 반영
아. <신 설>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6. <신 설>	6.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성과공유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개정사항반영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을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사항 반영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 2.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신 설>	3. 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개정사항 반영
⑥~⑧ (생 략)	⑥~⑧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신 설>	제47조의2(경제위기 시 수의계약) 제47조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	국가의 경제위기 등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사유 추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	국가의 경제위기 등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사유 추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국가의 경제위기 등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사유 추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개정사항 반영
제48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생 략) 1. ~ 2.(생 략) ②(생 략)	제48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③ <신 설>	③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위기 등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사유 추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개정사항 반영
제51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생 략) 1. 제4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51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제4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사목·아목,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 개정사항 반영
3. (생 략) ②제4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③ ~ ⑥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제47조제1항제5호가목 및 제47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47조제1항제5호가목5) 단서에 따른 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국가의 경제위기 등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사유 추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개정사항 반영
제57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	제57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다.	-.	경제위기시 업체부담 완화,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개정사항 반영
1의2. <신 설>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8조(입찰공고의 내용)	제58조(입찰공고의 내용)	
(생 략)	(현행과 같음)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별지서식 제5호)에 관한 사항	16의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별지서식 제5호)에 관한 사항	
17. <18로 이동, 신설>	17.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사항 반영. 제17호를 제18호로 이기
18. <17에서 이동>	1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2조(입찰보증금)	제62조(입찰보증금)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경제위기시 업체부담완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개정사항 반영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4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을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개정사항 반영 및 구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제71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제71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소액물품에 대한 최저가격낙찰제 부작용에 따른 법령 폐지, 「국가계약법시행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령」제42조 개정사항 반영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 제2항에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①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①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완화, 「국가계약법시행령」제43조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② ~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입찰참가자격 완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개정사항 반영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7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생 략) 1. ~ 2. (생 략) 3.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제7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개정사항 반영
4. ~ 5. (생 략)	4. ~5. (현행과 같음)	
제78조(계약보증금) ① ~ ② (생 략) ③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8조(계약보증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업체부담 완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개정사항 반영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80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80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업체부담 완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개정사항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2조(인증제품 우선구매) 1. ~ 11. (생 략) 12. <신 설>	**제102조(인증제품 등 우선구매)** 1. ~ 11. (현행과 같음)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5에 따른 지역기업**	우선구매를 위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지서식 제4호](제4조 관련) 「부당계약 사전진단」 체크리스트 상세내용 별지 참조 [별지서식 제5호](제58조 관련)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상세내용 별지 참조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2조 관련) 상세내용 별지 참조	[별지서식 제4호](제4조 관련) 「부당계약 사전진단」 체크리스트 상세내용 별지 참조 [별지서식 제5호](제58조 관련)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상세내용 별지 참조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2조 관련) 상세내용 별지 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주)5는 2021년 3월25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반영 사규속 숨은 오류찾기 공모에 따른 별지서식 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사항 반영

[별지서식 제4호](제4조 관련)

현 행

국민을 위한 정책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당계약 사전진단」 체크리스트

사업명			
부서명		작성자	
제출일자			

연번	부당계약 사전진단 점검사항	해당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공사(부서명)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 /N □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처리절차 없이 공사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 /N □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 /N □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 /N □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 /N □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 /N □ □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 /N □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 /N □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 /N □ □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 /N □ □

개 정 안

국민을 위한 정책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당계약 사전진단」 체크리스트

사업명			
부서명		작성자	
제출일자			

연번	부당계약 사전진단 점검사항	해당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공사(부서명)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 /N □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처리절차 없이 공사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 /N □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공급원가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 /N □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 /N □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 /N □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 /N □ □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 /N □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 /N □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 /N □ □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 /N □ □
11	(인지세법 3조에 따른 계약) 계약상대방과 인지세를 상호 균등하게 납부하기로 하였는가?	Y /N □ □
12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른 공정서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가?	Y /N □ □

* 공정서약서 내용 참고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적합하게 항목을 가감하여 작성

[별지서식 제5호](제58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국민을 품는 청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용역부서 담당 팀장 ○○○ (☎ ***-***-****)*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내부 부패·비리행위 익명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국민을 품는 청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 (☎ ***-***-****)*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내부 부패·비리행위 익명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2조 관련)

현 행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text{상당가격}}\right) + \left[2 \times \left(\frac{\text{추정가격의}80\%\text{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text{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60\%\text{상당가격}}\right)\right]$$

개 정 안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 기술·지식능력 · 인력조직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경영상태 · 상호협력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80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text{상당가격}}\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3)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4) 창업기업의 수행실적범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left[2\times\left(\frac{\text{추정가격의}80\%\text{상당가격}-\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text{상당가격}-\text{추정가격의}60\%\text{상당가격}}\right)\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3)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4) 창업기업의 수행실적범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주5)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첨부2 **계약규정 전문**

계 약 규 정

전문개정 2010.12.31
개정 2011. 6. 9.(개폐정리)
개정 2013. 4.30.(개폐정리)
개정 2013. 7. 5.
개정 2014. 8.21.
개정 2015. 6.30.(개폐정리)
개정 2015. 7.31.
개정 2016. 4. 7.
개정 2017 .6. 1(개폐정리)
개정 2017. 7.13.
개정 2018. 9.21.
개정 2020. 9.14(개폐정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국가계약법」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

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① 계약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각종 보증이행과 관련한 업체선정방법, 보증금, 예정가격 등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예규·해석 등을 준용한다.

제4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전에 「부당계약 사전진단」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8. 9.21>

제5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사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공사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 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주무부처 또는 공사 감사로부터 파면(면직),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요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7.31., 2018. 9.21>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5. 7.31.>

④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결과(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7.31., 2018. 9.21>

⑤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위탁 범위와 다른 경우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장에게 위탁사무 범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5. 7.31., 2018. 9.21>

⑥ 제2항의 임직원에 대하여 면직 또는 정직 외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사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은 위탁 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15. 7.31.>

⑦ 계약사무의 위탁, 철회 및 위탁기간의 종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는 인계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7.31.>

1. 계약사무의 위탁 :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2. 계약사무의 철회: 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탁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3. 계약사무 위탁기간의 종료: 위탁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⑧ 사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44조에 해당하는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야 한다. <신설 2016. 4. 7><개정 2017. 7.13>

⑨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신설 2015. 7.31.>

⑩ 계약책임자는 본사는 계약업무담당부서장이, 영업부서는 영업부서장이 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이 계약책임자가 될 수 있다.<신설 2015. 7.31.><개폐정리2017.6.1.><개정 2017. 7.13>

제6조(계약심의위원회) ① 계약의 필요성·적정성 여부 및 입찰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거나 제안서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라 칭한다.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소속 임직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세부적인 운영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7.5〉

③ 추정가격 1천만 원 초과 물품·공사·용역의 수의계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④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소속직원 외 외부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위원정수의 3분의 1 이상<개정 2016. 4. 7>
2.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은 위원정수의 2분의 1 이상<개정 2016. 4. 7>
3. 관련법령 또는 정부고시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

⑤ 소속직원 외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제5조 제10항에 불구하고 본사 계약책임자가 주관한다.<신설 2016. 4. 7><개폐정리2017.6.1.><개정 2017. 7.13>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공사가 공급할 주요자재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개폐정리 2015. 6.30>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8조(예정가격의 비치) 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의 경우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2% 금액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예비가격의 폭은 가급적 크게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중 4개를 선정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며, 예비가격 4개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입찰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입찰일 경우 복수예비가격을 정보처리장치에서 결정,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중 2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가장 많이 선택된 예비가격 4개의 산술평균된 가격을 최종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⑤ 제4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

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2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 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사장이 인정한 가격<개정 2017. 7.13>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④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낮추려는 경우에는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포함한다)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31]

제10조의3(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해당 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폐정리 2020. 9.14>

[본조신설 2018. 9.21]

제11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13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13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1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의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7.13>

제12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사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제13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7. 7.13>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개정 2017. 7.13>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신설 2017. 7.13>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신설 2017. 7.13>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신설 2017. 7.13>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신설 2017. 7.13>
17. 기타 용역: 100분의 6<신설 2017. 7.13>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14>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제14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개정 2017. 7.13>
2.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개정 2016. 4. 7>
4.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정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④ 제5조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2개사 이상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최저가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7>

제15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개정 2017. 7.13>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6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개정 2017. 7.13>

제17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예정가격의 변경)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절 일반경쟁입찰

제19조(계약의 방법) ①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④ 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 고시금액 미만<개정 2017. 7.13>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7억원 미만
3.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경우 : 고시금액 미만<개정 2017. 7.1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접수 등을 공사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개폐정리 2015. 6.30>

⑦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7. 7.13>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경우 판로지원법 제7조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

라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7. 7.13>

⑨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21>

제20조(경쟁방법)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2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2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일 것<개정 2017. 7.13>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7.13>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17. 7.13>

제2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②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용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1.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른다.

제24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개정 2017. 7.13>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제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7. 7.13>

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정 2017. 7.13>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정 2017. 7.13>

③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7. 7.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⑥제5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17. 7.13>

제25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이 규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7. 7.13>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28조(공사의 입찰) ①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5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

②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제1항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④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1. <삭제 2017. 7.13>
2. <삭제 2017. 7.13>

⑤제4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7. 7.13>

1. <삭제 2017. 7.13>
2. <삭제 2017. 7.13>

⑥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공사의 현장설명) ①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설명일에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사로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적지역
2. 육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및 무인도
3. 산간벽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제30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③「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71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⑥제28조제6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개폐정리 2015. 6.30>

제34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제58조 각 호의 사항
3. 다량물품을 매각하거나 제조·구매할 경우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은 제외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제1항 각호의 용역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경매)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절 제한경쟁입찰

제38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제19조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제39조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7. 7.13>

1.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개정 2017. 7.13>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신설 2017. 7.13>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신설 2017. 7.13>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신설 2017. 7.13>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신설 2017. 7.13>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개정 2017. 7.13>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고시금액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다.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개정 2018. 9.21>

8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신설 2018. 9.21>

9.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개정 2017. 7.13>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개정 2017. 7.13>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

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58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9.21>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개정 2018. 9.21>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개정 2018. 9.21>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④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 7.13>

⑤제38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⑥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①제38조제3항 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41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58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14>

제3절 지명경쟁입찰

제42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19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

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개정 2017. 7.13>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개정 2018. 9.21>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18. 9.21>

제43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제42조제1항 내지 제3호·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7.13>

1. 공사
   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제4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8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40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절 수의계약

제47조(수의계약) 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7. 7.13>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신설 2014. 8. 21>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개정 2014. 8. 21>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개정 2014. 8. 21>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다만, 재직 중인 직원 및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임원급 이상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제외한다. <개정 2014. 8. 21, 2016. 4. 7. 2017. 7.13>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신설 2016. 4. 7>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신설 2016. 4. 7>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51조제1항 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신설 2016. 4. 7>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신설 2016. 4. 7>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신설 2016. 4. 7>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신설 2016. 4. 7>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5. 7.31>

1. 공사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사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⑥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제9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7.31>

⑦ 제5항과 제6항은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7.31>

⑧ 계약담당자가 제7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7.31><개폐정리 2020. 9.14>

제48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49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분할수의계약) 제47조제1항제5호 라목, 제48조 및 제49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51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개정 2014. 8. 21>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7. 7.13>

②제4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7.13>

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2.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개정 2017. 7.13>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이상 체결할 수 없다.<개정 2017. 7.13>
5. 제5항에 따른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개정 2017. 7.13>

③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④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5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제52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제47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5호다목·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4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7. 7.13>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55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②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입찰참가의 통지)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58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1.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신설 2017. 7.13>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신설 2017.

7.13>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야 필요한 경우<신설 2017. 7.13>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신설 2017. 7.13>
⑤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7. 7.13>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7. 7.13>

제57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입찰 사전협의) 제57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 담당부서는 입찰공고 의뢰 전에 계약 소관부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21]

제58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8. 낙찰자결정방법(제7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10.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4. 우편입찰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5.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사장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개정 2017. 7.13>
16.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6의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별지서식 제5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7. 7.13><개정 2018. 9.21>
1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9조(입찰참가신청) ①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제60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7. 7.13>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제71조제6항·제7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6.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나. 물량내역서
다. 대형공사계약의 경우 입찰안내서
6의2. 제72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신설 2017. 7.13>
7.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삭제 2017. 7.13>
[조문제목 개정 2017. 7.13]

제61조(입찰방법) ①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개정 2017. 7.13>
⑥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성능·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 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④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개정 2017. 7.13>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개정 2017. 7.13>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개정 2017. 7.13>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신설 2017. 7.13>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신설 2017. 7.13>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신설 2017. 7.13>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신설 2017. 7.13>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⑤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개정 2017. 7.13>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5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7. 7.13>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⑥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제6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제4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초에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6조(입찰보증금의 귀속) ①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등에게 통지하고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②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제67조(보증금 등의 귀속) ① 납부된 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수입금으로 수납 처리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공사 소유 유가증권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3.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에는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수입금으로 수납 처리한다.
4. 정기예금증서 등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수납 처리한다.

② <삭제 2017. 7.13>

제68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사장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1.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신설 2017. 7.13>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 7.13>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제99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신설 2017. 7.13>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제28조제4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 <삭제 2017. 7.13>
7.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8.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사장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개정 2017. 7.13>
9. 제72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0.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에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4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신설 2017. 7.13>

제69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사장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7. 7.13>

제7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사장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②제35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③ <삭제 2017. 7.13>

제71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이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공사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개폐정리 2015. 6.30>
3.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다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③제2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④제2항에 불구하고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제2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2017. 7.13>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7.13><개폐정리 2020. 9.14>

⑦제5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⑧제5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7.13>

제7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①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폐정리 2015. 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

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별표)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9.21>

⑧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를 준용한다.<신설 2016. 4. 7>

제73조(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7. 7.13>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개폐정리 2020. 9.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7. 7.13>

제74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71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제71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71조제5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개정 2017. 7.13>

②제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76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7조(계약서작성의 생략)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③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2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정 2017. 7.13>
2.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정 2017. 7.13>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⑦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62조제4항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⑧「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제62조제6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7. 7.13>

제79조(계약보증금의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폐정리 2015. 6.30>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95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개폐정리 2015. 6.30>

④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⑤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귀속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 7.13>

제80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제7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81조(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감독) ①공사·제조·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개정 2017. 7.13>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④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직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3조(검사)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3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7.31>

③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

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8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⑥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⑨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제82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2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7.13>
⑪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신설 2017. 7.13>

제84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다만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개정 2017. 7.13>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제85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82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83조제9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제86조(대가의 지급) ①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이 규정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④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⑤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지급기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4항 내지 제7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납부사실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 7.13>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신설 2017. 7.13>
2.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신설 2017. 7.13>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신설 2017. 7.13>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신설 2017. 7.13>
5.「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7조의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경우<신설 2017. 7.13>
6. 규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서 대가를 지급이 지체되면 공사에 중대한 손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신설 2017. 7.13>
7. 규정 제77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7. 7.13>
8. 기타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고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제출이 면제되며, 각종 계약실적 등록 및 공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 지출 행위 등<신설 2017. 7.13>

제86조의2(선금의 지급) 계약담당자는 물품·공사·용역계약 시 계약체결에 따른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3.7.5〕

제87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8조(대가의 수납) ①재산의 매각, 대출, 용역의 제공, 기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5. 연불수출 또는 수출 후 대금 송금의 결제 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재산의 매각계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대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재

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것이 공사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폐정리 2015. 6.30>

③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7.13>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7.13>

⑤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기존 제88조 제3항 이기 2017. 7.13.>

⑥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기존 제88조 제4항 이기 2017. 7.13.>

제89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0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②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공사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개정 2017. 7.13.>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개정 2017. 7.13.>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9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78조제2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그 사용잔액은 공사에 납입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④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⑦ 제62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⑧ 제62조제4항·제6항 및 제66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폐정리 2015. 6.30>

제9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해당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이를 제수입보증금 계정으로 정리한다.

③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중에서 지급한 후 그 잔액을 제수입보증금 계정으로 정리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개정 2017. 7.13.>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 대금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유가증권의 최종 원리금 상환기일이 매각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개정 2017. 7.13.>
3. 하자보수보증금을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④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제수입보증금 계정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유가증권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⑤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제수입보증금 계정으로 정리된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2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사장(또는 당해 계약을 위임받은 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령·예규·해석 등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3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13.>

제93조의2(임의 연장계약금지) 임차·시설관리·유지보수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신규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어 신규계약이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을 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13]

제94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개정 2017. 7.13.>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신설 2017. 7.13.>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신설 2017. 7.13.>

② 사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7. 7.13.>

제95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14>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개정 2017. 7.13.>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6조(개산계약 등) 개산계약, 종합계약, 공동계약, 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예규・해석 등을 준용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97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사: 1천분의 0.5<개정 2018. 9.21>
2. 물품의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사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단서신설 2017. 7.13.><개정 2018. 9.21>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000분의 1.25<개정 2018. 9.21>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 1.5<개정 2018. 9.21>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개정 2018. 9.21>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9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규정에 의해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②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개폐정리 2015. 6.30>

제9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 7.13.>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 및 공사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개폐정리 2020. 9.14>

④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14>

[전문개정 2017. 7.13.]

제6장 보칙

제100조(계약에 관한 서식) 입찰 및 계약시 국가계약법령 및 정부의 각종예규 등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하여 가감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1조(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 4. 7]

제102조(인증제품 우선구매)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21>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품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제품
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집단촌(이하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의 생산품
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9. 「협동조합기본법」제95조의2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10.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마을기업제품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제품

[본조신설 2014. 8. 21]

제103조(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①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14>

②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14>

③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14>

[본조신설 2018. 9.21]

제104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별지서식 제6호)를 제출해야 한다.

④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14>

[본조신설 2018. 9.21]

부 칙(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입찰공고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 칙<2011.6.9>

이 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30>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5>

이 규정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21>

이 규정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3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31>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규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계약사무 위탁기준 및 원가조사 의뢰기준 업무지시(인사처-4640, '13.7.9.)」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7. 6. 1>

이 규정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13>

이 규정은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21>

이 규정은 201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14>

이 규정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제83조 관련) <신설 2015. 7.31>

검 사 조 서(물 품)

1. 계약총액 : 일금 원정
2. 계약자 상호 · 성명 :
3.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공 급 가 격	부가세	합계액	납 품 기 한	납 품 년월일	비 고

상기 물품을 정히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 장 필

인 수 자

- 책임자(처·실장) (인)

(팀 장) (인)

검 사 인(처·실) (인)

검사입회인(감사역)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제83조 관련) <신설 2015. 7.31>

검 사 조 서(용 역)

1. 용 역 명 :

2. 계약총액 : 일금 원정(₩ 부가세 포함)

3. 계약자 상호 · 성명 :

4. 계약기간 : ~

5. 검사요청일 : 년 월 일

6. 검사내역 : "별 첨"

상기 용역결과를 검사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책임자(처·실장) (인)

(팀 장) (인)

검 사 인(처·실) (인)

검사입회인(감사역)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검사내역 체크리스트(용 역)

검사내역	이행 여부	근거자료
1. 계약 관련 적정성 확보		
1-1. 내·외부 청렴서약서 징구 등 임직원행동강령 준수	□	
1-2. 계약보증금(이행증권), 선급금증권(계약금 지급 시) 징구	□	
1-3. 용역공정율, 투입인력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	
2. 용역 수행 관리 철저		
2-1. 진행 공정율 및 투입인력 등에 대한 점검	□	
2-2. 과업지시내용의 이행 충실도 점검	□	
2-3. 업무범위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철저	□	
3. 과업지시 이행여부 점검		
3-1.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각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	
3-2. 요구사항에 대한 추적 결과 산출물 작성	□	
3-3. 미 이행사항에 대한 별도 보고서 작성 및 계약금액 정산	□	
3-4. 미 이행사항에 대한 향후계획 수립	□	
4. 용역결과물 검수		
4-1.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정의서 등 업무범위 정의서 검수	□	
4-2. 각종 수시 보고서(일, 주간, 월간보고 및 회의록 등) 검수	□	
4-3. 완료보고서 등 최종결과물 검수	□	
5. 하도급관리의 적정성 확보		
5-1.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적정성판단자기평가표 등 징구	□	
5-2. 하도급대금 지급증빙 징구	□	
6. 보안조치 준수		
6-1. 보안서약서, 보안조치시행확약서 징구	□	
6-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PC 초기화 수행	□	
7. 사후관리		
7-1. 계좌입금의뢰서, 계좌사본, 하자보증금(이행증권) 등 징구	□	

* 각 용역에 적합하게 항목을 가감하여 작성

검 사 인(처·실)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3호](제83조 관련) <신설 2015. 7.31>

검 사 조 서(공 사)

1. 사 업 명 :

2. 계약총액 : 일금 원정(₩ 부가세 포함)

3. 계약자 상호 · 성명 :

4. 계약기간 : ~

5. 검사요청일 : 년 월 일

6. 검사내역 : "별 첨"

상기 공사결과를 검사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책임자(처·실장) (인)

(팀 장) (인)

검 사 인(처·실) (인)

검사입회인(감사역)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검사내역 체크리스트(공 사)

검사내역	이행 여부	근거자료
1. 계약 관련 적정성 확보		
1-1. 내·외부 청렴서약서 징구 등 임직원행동강령 준수	□	
1-2. 계약보증금(이행증권), 선급금증권(계약금 지급 시) 징구	□	
1-3. 용역공정율, 투입인력계획 등이 포함된 착공계 승인	□	
2. 용역 수행 관리 철저		
2-1. 진행 공정율 및 투입인력 등에 대한 점검	□	
2-2. 과업지시내용의 이행 충실도 점검	□	
2-3. 설계(내역)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철저	□	
3. 시방서 이행여부 점검		
3-1. 시방서, 설계도서 등 각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	
3-2. 시방서에 대한 추적 결과 산출물 작성	□	
3-3. 미 준공사항에 대한 별도 보고서 작성 및 계약금액 정산	□	
3-4. 미 준공사항에 대한 향후계획 수립	□	
4. 용역결과물 검수		
4-1. 시방서, 설계도서 등 업무범위 정의서 검수	□	
4-2. 각종 수시 보고서(기성검사보고서, 준공조서 등) 검수	□	
5. 하도급관리의 적정성 확보		
5-1.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적정성판단자기평가표 등 징구	□	
5-2. 하도급대금 지급증빙 징구	□	
6. 보안조치 준수		
6-1. 보안서약서, 보안조치시행확약서 징구	□	
7. 사후관리		
7-1. 계좌입금의뢰서, 계좌사본, 하자보증금(이행증권) 등 징구	□	

* 각 공사에 적합하게 항목을 가감하여 작성

검 사 인(처·실)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4호](제4조 관련) <신설 2018. 9.21>

「부당계약 사전진단」 체크리스트

사업명			
부서명		작성자	
제출일자			

연번	부당계약 사전진단 점검사항	해당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공사(부서명)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 / N □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처리절차 없이 공사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 / N □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 / N □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 / N □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 / N □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 / N □ □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 / N □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 / N □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 / N □ □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 / N □ □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2조 관련)<신설 2018. 9.21>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cdot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cdot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right) + \left[2 \times \left(\frac{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right)\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3)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4) 창업기업의 수행실적범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별지서식 제5호](제58조 관련)<신설 2018. 9.21>

국민을 품는 정행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용역부서 담당 팀장 ○○○ (☎ ***-***-****)*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내부 부패·비리행위 익명 신고
QR코드 스캔 또는 www.kbei.org(신고서작성)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www.kbei.org/request/khgc

[별지서식 제6호](제104조 관련) <신설 2018. 9.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 명 :ㅇㅇㅇㅇ] 물품·공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ㅇㅇㅇㅇ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